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19]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문20]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 정답 및 해설 ]**

1. ③

[해설] 정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정책과 국민과의 권력관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의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2. ②

[해설] 정부실패의 극복대안으로 대두된 감축관리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낭비를 합리적으로 제거하는 관리기법이다. P. Drucker에 의하여 소개된 목표관리제(MBO)는 기존의 일방적, 지시적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의하여 설정한 목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성과 지향적 관리기법으로서 감축관리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①

[해설] ① 교환관계(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이 아닌, 거래협상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래적 리더십), 임무수행의 비개인화(인격적 관계의 상실), 권력구조의 이원화(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의 갈등), 공급자 중심의 행정 등은 규칙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관료제모형에 해당된다. ④ 근대적 과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국가재창조 개념을 기준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김석준).

## 4. ④

[해설] 정책모형은 정책수단을 효과에 연결시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수집된 자료를 설정한 모형에 대입시켜 현실의 문제를 수학적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정량(定量)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정책모형을 작성하는 이유는 정책대안의 탐색에 도움을 주는 것과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④의 경우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를 조작하여 결과변수를 예측하는 것이지 결과변수까지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 5. ④

[해설] 분배정책은 정책의 피해자가 별로 없으므로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반면, 규제정책은 비용 부담자의 저항을 받으므로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낮다.

## 6. ③

[해설]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에게로 권력이 이전되어 집행자가 결정자의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유형이고 ㄱ, ㄴ, ㄷ이 여기에 해당되며 ㄹ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 된다.

## 7. ④

[해설] ④ 선정요인은 조사자의 판단으로 배정하거나 자원자를 신청 받아 조사대상집단을 구성할 때 구성원이 다르므로 발생하는 효과이다. 선정요인은 통제집단이 없는 비실험에서도 발생하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교집단이 있는 준실험에서도 구성원을 조사자 임의로 양 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게 된다. ① 오염요인은 진실형에서 발생하는 누출효과와 모방효과를 합한 효과이다. ② 도구요인(측정수단요인)은 측정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③ 상실요인은 피조사자의 일부가 중도포기 등으로 탈락하여 최초의 대상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 8. ②

[해설] 보기의 모든 이론은 동기부여의 요인이 무엇(what)인가를 연구하는 내용이론인데 그 중에서 Alderfer의 성장욕구(Growth)만이 상위차원의 욕구로서 Y이론적 성격이고 나머지는 하위차원의 욕구로서 X이론적 성격을 띤다. D. C. McClelland는 개인의 욕구 중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된 욕구들을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권력욕구에서 성취욕구로 갈수록 더욱 상위차원의 욕구이다.

## 9. ②

[해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다. ① 발전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추종자의 복종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며 ③ 촉매적 리더십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정부부문을 준거로 조직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며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리더에 대한 추종자들의 개인적 일체화와 헌신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다.

## 10. ①

[해설] 이념형 관료제를 제시한 막스 베버(Max Weber)는 주로 관료제의 순기능적 연구만을 하였으며 목표의 대치 등 관료제의 역기능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인간관계론자들과 미국사회학자들에 의하여 관료제비판이 전개되었다. 역기능 중에 목표의 대치(전환; displacement)현상은 목표와 수단의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서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에서 주장되고 Merton의 동조과잉에 따른 목표전환(대치) 현상에서 제기되었다.

## 11. ③

[해설] 전자정부는 정부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조직과 업무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행정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최초로 제시하고 추진하였으며 신공공관리론(NPM)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말하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 작지만 능력 있는 정부 등을 특징으로 한다.

## 12. ②, ③

[해설] 이 문제는 문제의 복원이 불확실하거나 출제상의 오류이다. 물론 이 문제가 맞는다면 복수정답이다. 감사원 사무차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반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의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분보장이 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인 반면, 기타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라는 점이다. 국회사무처법에 의하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 국회사무처법 -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13. ①

[해설] 대표관료제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관료로 충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계층을 관료로 채용함으로써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한 차별해소적인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역차별을 발생시키게 된다.

## 14. ④

[해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주의할 것은 노조의 전단계인 기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달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대상에 보수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 15. ③

[해설] ③ 예비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우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예비비를 청구하지 않고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① 예비비는 완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사용 시 사전의결을 받지 않으므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고 초과 지출한 것이므로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②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승인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하며 사용된 예비비 내역에 관한 관리 및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④ 목적예비비는 특정 용도를 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경비로서 봉급, 급량비, 공공자금, 재해대책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

## 16. ①

[해설] ① 성과주의예산(PBS)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로서 단가가 현저하게 상승한 활

동에 대해서는 능률적 관리를 촉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의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나 ② 최종산출물을 찾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③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는 회계학적 지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 곤란하며 ④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의회에서 심의하기는 용이한 반면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한 단위원가 등에 대해서 의회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는 어렵게 된다.

## 17. ③

[해설] 이 문제의 경우 문제를 정확히 읽어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를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즉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인 사고이월과 예비비를 제외하면 답이 나오게 된다. 또한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용(입법과목의 상호용통이므로 의결필요), 명시이월(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의결을 얻어 이월), 계속비(해당연도의 연부액은 별도 의결), 국고채무부담행위(계약연도와 지출연도가 다를 경우 이를 해소시키는 신축성 제도로서 채무부담의 권한만 준 것이지 지출권한을 준 것이 아니므로 별도 의결)이다. 주의할 것은 예비비의 경우 설치 시에는 의결을 받지만 구체적 사용 시에는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후승인을 받는다.

## 18. ②

[해설] 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예고제와 입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법은 신고자의 신변보호 요청 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신고자 자신은 물론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보호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33조). ③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정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료에 의한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신뢰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통제비용을 감소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는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와 방침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루어졌는지를 자체 확인 평가하는 통제로서 전문화되는 현대행정 하에서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19. ②

[해설]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감사청구는 기존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받던 것을 시, 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군, 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3조-4(주민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0. ④

[해설] ① 지방세는 재산세 등 재산과세 위주이므로 신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국세는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중심이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인 증가가 가능하다. ② 지방세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주의를 실현하는 응익주의가 지배적이다. ③ 재정자립도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크기나 경상수지비율 등 세출구조를 고려하지 못한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같이 특정사업을 위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이 아니라 보통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에 해당한다.